

第 24 回 達西區議會 (臨時會)

條例整備特委會議錄 (附録)

第 1 號

大邱直轄市 達西區議會 事務課

目 次

1. 大邱直轄市 達西區統 · 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(案)에對한修正(案)	21 面
---	------

대구직할시달서구통 ·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 에대한수정(안)

1. 수정이유

- 통의 규모 광역화로 인한 통장의 업무의 과중과 그에 따른 차별적 수당지급시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30조에 의한 예산편성지침과 상치되어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견해와 차별적 수당 지급시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어 현행유지

2. 수정 주요골자

- 통의 확정기준을 4개반~6개반으로 현행 유지(안 제3조 2항)
- 통장 수당의 40만 한도내 지급규정을 삭제 현행유지(안 제3조 2항)
- 인구 고령화로 인한 통장 연령을 70세까지를 60세까지로 조정

3. 수 정 안

대구직할시달서구통 ·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 에대한수정안(안)

대구직할시달서구통 ·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제3조 제2호중 "24개 반으로 구성하며 40만원 한도내에서 그 규모에 따라 수당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."를 "6개 반으로 구성한다"로 한다.

안제5조 제2항 제1호 "관할구역내 1년이상 거주한 30세이상 7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 남 · 여(지원자 포함)으로서"를 "관할구역내 1년이상 거주한 30세이상 60세이하의 일반 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 남 · 여(지원자포함)으로서"로 한다.

4. 신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 2 조(하부조직) 행정시책의 원활한 <u>말단침투와 동행정</u>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<u>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.</u></p>	<p>제 2 조(하부조직)<u>추진과</u>.....</p>	<p>제 2 조(하부조직)<u>추진과</u>.....<u><좌동></u>.....</p>
<p>제 3 조(획정기준) 반의 <u>획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1. 반은 20내지 30가구를 <u>구성한다.</u>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<u>범위내에서</u> 자연부락 <u>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</u>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2. 통은 4개내지 <u>6개반으로</u> 구성한다.</p>	<p>제 3 조(획정기준) 1. <u>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</u><u>범위내에서</u> <u>공동주택 및</u>..... 2.<u>24개</u> <u>반으로 구성하며 40만원</u> <u>한도내에서 그 규모에</u> <u>따라 수당을 조정 지급</u> <u>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 3 조(획정기준) 1. <u>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</u><u>범위내에서</u> <u>공동주택 및</u>.....<u><좌동></u>..... 2. <u><현행유지></u></p>
<p>제 5 조(통·반장의 위촉) ① (생략) ② 통·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.</p> <p>1. 통장은 당해 통 <u>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</u></p>	<p>제 5 조(통·반장의 위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1.<u>관할</u> <u>구역내에 1년이상 거주</u></p>	<p>제 5 조(통·반장의 위촉) .① (현행과 같음) ② 1.<u>관할</u> <u>구역내에 1년이상 거주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써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</p> <p>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0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지도 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50세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.</p>	<p>한 30세이상 7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 남녀(지원자포함)으로서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다만 신규 개발지역에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로 위촉할 수 있다.</p>	<p>한 30세이상 6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 남녀(지원자포함)으로서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다만 신규 개발지역에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로 위촉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좌 동〉</p>
<p>2.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이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자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</p>	<p>2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	<p>2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한다.</p> <p>다만, 위의 요건을 갖춘 <u>일반 예비군중 반장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우선 위촉한다.</u></p> <p>3. (생략)</p>	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<u>자 중에서 선출 또는 추천대상자가 없을 경우</u>에 한하여 반장 위촉을 원하는자를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	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<u>자 중에서 선출 또는 추천대상자가 없을 경우</u>에 한하여 반장 위촉을 원하는자를 위촉할 수 있다. <좌 동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